수상레저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입대상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

- 상해사망 담보는 만15세 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계약	배상책임조항(의무보험) - 수상레저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피보험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에 또는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기본계약	배상책임조항(의무보험) - 수상레저 개인소유자용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에 또는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기본계약	수상레저기구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가 보험기간 중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수상레저기구에 장착된 표준기기, 장비품 포함. 단 연료, 식료품, 기타 소모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계약	수상레저활동중 상해	보험기간중 수상레저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입은 손해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ㅇ 배상책임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각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경우 이 계약에 따른 보상액은 각각의 책임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ㅇ 수상레저기구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자기부담금

ㅇ 상해보험금

- 사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하는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 예시

- 보험기간 : 1년
- 목적물 : 개인 소유자용 모터보트(동력) 1대, 4인승 이하

보장명		보험가입금액(원)	자기부담금(원)
배상책임	대인	150,000,000	100,000
	대물	2,000,000	100,000
수상레저기구손해		1,000,000	100,000
영업보험료 計			**116,600원**

※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